

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

201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1월 17일,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1차 건설복지위원회(2015.12. 2.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은수 복지환경국장)

가. 상정 이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
규정된 용어 변경 사항등을 정비하고, 「성별영향평가분석법」에 따른
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변경
- 2)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 명시
- 3)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가족·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
- 4)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 및 결산, 성인지 통계,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
- 5) 모·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
- 6)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차별·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
- 7)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
- 8) 상위법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둠

9) 현행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하여 양성평등 실현
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"생략"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략)

5. 토 론 요 지 : 이미자 위원외의 수정안 동의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첨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수정 동의안

개 정 안	수 정 안
부칙 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<u>여성위원회</u> 는 이 조례에 따라 <u>위촉된</u>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로 본다.	부칙 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<u>위촉 또는 임명된</u> 서울특별시 종로구 <u>여성위원회 위원</u>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위원으로 <u>위촉 또는 임명된</u> 것으로 본다.